

##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### 제 1 장 총칙

#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카카오 이사회 내에 설치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제 3 조 (권한)

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자를 추천하며,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를 사전 검토한다.

### 제 2 장 구성

#### 제 4 조 (구성)

-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.
-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 5 조 (위원장)

1. 위원회는 제 8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3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**제 3 장 회의**

### **제 6 조 (소집권자)**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3 항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**제 7 조 (소집절차)**

1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3 일 전에 각 위원에 우편, 전자우편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**제 8 조 (결의방법)**

1.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3. 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## 제 9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
2.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의 사전검토
3.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
4.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제 9 조의 2 (이사 후보의 선정)

위원회는 이사 후보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(성별, 연령, 종교, 국적, 인종, 민족, 문화적 배경 및 기타 다양성 요소 등)
2.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(사외이사 구성비)
3. 기업가치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(최근 5년 이내 횡령·배임으로 인한 확정판결 유무,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 유무 등)
4.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제 382 조, 제 542 조의 8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

### 제 9 조의 3 (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선정)

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선정시 상법 제 542 조의 11, 제 542 조의 12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 또는 이사 후보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.

## 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**제 11 조 (의사록)**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**제 4 장 보칙**

### **제 12 조 (보고)**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**제 13 조 (간사)**

1.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2.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### **제 14 조 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 **부칙**

이 규정은 2019 년 11 월 6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1 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2 년 2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.